

제253회 영등포구의회  
2024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【김지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6. 20.

행 정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경 과

의안 제347호로 2024년 5월 31일 김지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에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고,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·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참여예산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으로 확대(안 제 1조, 제3조~제5조, 제6조~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5조)
- 나.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홈페이지 공고일 수 연장(안 제6조)
- 다.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성별·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(안 제10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4. 5. 16.~ 5. 21.):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산에 관한 주민의 참여를 “예산편성 과정”에서 “예산편성 등 예산과정”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자 발의된 것으로,
  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개정안 전체에서 절차 중 “예산편성”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을 “예산과정”으로 변경하여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및 평가 등의 과정까지 확대함.
  - 안 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에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 공고기간을 “10일”에서 “15일”로 변경함.
  - 안 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·연령대별 인원을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함.

## 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1)에 근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'11.7.18. 제정된 바 있으며, 동 조례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예산의 편성 과정까지임.
  
- 한편, 상위법인 「지방재정법」이 '18.3.27. 개정되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및 평가 등의 과정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를 넓힌 바 있고, 이번 일부개정은 이러한 기초를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서울시 6개 자치구<sup>2)</sup>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여 시행 중임.
  
- 아울러, 위원회 구성은 성별·연령대 비율을 고려할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인정되며,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제5항<sup>3)</sup>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---

1)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②~⑤(생략)

2) 강동구, 노원구, 서대문구, 서초구, 성동구, 성북구

3)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 참 고 자 료

## 1

## 지방재정법

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~④ 생략

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